

프랑스國立警察의 責務에 관한 法

- 소개 및 譯文을 중심으로 -

(Code de déontologie de la Police Nationale)

김 성 수*

1. 序 言

프랑스에는 「警察法」이라는 명칭의 단행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한다.¹⁾ 그러면 경찰의 업무와 조직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비교법적으로 흥미를 끌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²⁾을 주는 프랑스경찰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폴레옹 이래의 오랜 경찰의 조직

과 업무에 관한 법령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警察法」의 연구는 프랑스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그 종합적 연구가 거의 없고, 실제로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경찰법의 체계적 이해³⁾도 소홀히 되는 편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찰을 이해하는데 警察法⁴⁾은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제도나 경

*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법학박사

- 1) 주지하는 바대로 영국에서는 警察法(police act)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독일 및 스위스·오스트리아에서는 Polizeigesetz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警察法이라는 명칭의 법률, 중국에서도 人民警察法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에는 警察法이라는 단행법이 없고, 각각의 경찰에 따라 연방법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법전의 일부분으로 경찰의 조직과 임무를 규율하고 있다.
- 2) 우리와 가장 비슷한 경찰조직-國家警察-을 가지는 점에서 그러하다.
- 3) 警察法이라는 명칭을 가진 저작으로는 André Decocq / Jean Montreuil / Jacques Buisson, Le Droit de la Police, Litec이 있다. 1991년에 1권이 나왔고, 1998년에 제2권이 나왔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警察法이나 警察學이라는 학문명도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行政法이나 刑事法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 4) 여기서 경찰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경찰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단행법률이라는 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경찰에 관한 전체의 법령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警察法이라는 용어보다는 警察行政法이라는 용어가 慣用되는데, 警察法이 우리의 「警察法」이라는 단행법률의 注解나 註釋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달리 독일법계에서는 警察法이라는 단행법률과 이보다 넓은-물론 이를 포함하지만- 범위의 警察法이라는 학문분야가 별도로 존재한다.

찰조직, 경찰업무 등이 기본적으로 경찰법령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프랑스 경찰조직과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법규정을 살펴보고,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법전은 『Code de déontologie de la Police Nationale』라고 하는 법률로서 이를 『국립경찰의 責務에 관한 法律』이라고 부르고자 한다.⁵⁾

우선 데옹톨로지(déontologie)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직업윤리”를 뜻하

는 단어이다. 직업윤리라는 것은 공적 또는 사적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적 규범 및 도덕규범을 총칭한다.⁶⁾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경찰윤리현장에 해당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서 이보다는 더 나아가 警察官의 義務를 중심으로 다루고, 또한 법령의 형태를 분명하게 띄므로 『경찰관의 책무에 관한 법』으로 옮기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경찰책무에 관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본법과 그것의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이 그에 “가까운” 작용을 하고 있다.⁷⁾

또한 코드(Code)는 우리의 法典에 해당

5) 경찰대학에서 발간한 比較警察論 교과서(가령 2001년판, 제342쪽)에서도 이 법에 대하여 경찰윤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고 번역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번역은 기본적으로 법조문 자체의 直譯이 아니라 기능을 중심으로 意譯한 것이었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 내용이 경찰관의 직무와 그 한계, 책임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警察官職務執行法이라고 하는 것은 본 法典보다는 오히려 이후에 나온 『警察官의 任用에 관한 命令』(Règlements intérieurs de la Police Nationale ; Règlement Général d'Emploi de la Police Nationale)이 더 가깝다. 외국경찰법을 연구하면서 번역이 가져오는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6) 관리, 법관(가령 신중의무, 직무상의 비밀유지) 및 규제를 받는 자유직에 종사하는 자(가령 변호사, 법원보조직원, 의사)에 대하여 인정되어지는 것으로 경찰관에 대하여도 이러한 성질이 인정되어 법전이 마련된 것이다. 직업윤리 규범은 직무별로 또는 직업별로 다르지만 그 규범에 대한 위반은 징계책임(poursuite disciplinaire)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전은 경찰의 책무에 관한 법(Code de déontologie de la police nationale)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법전이 마련되어 그 윤리로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가(Code de déontologie des architectes), 치과 의사(Code de déontologie des Chirusiens-dentistes), 의료(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심리상담자(Code de déontologie des psychologues), 조산원(Code de déontologie des sages-femmes), 수의사(Code de déontologie vétérinaire)의 법전이 그것이다.

7) 그리하여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倫理法典』보다는 좀더 의역하여 『警察官의 責務에 관한 법』(Code de déontologie)으로 옮기고자 한다.

하는 용어로 동일한 법분야에 관련된 사항을 모아 정리한 법률의 집합체로서 가령 민법전, 상법전, 민사소송법 등의 기본법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의 법전은 法습으로서의 조직적 통일체가 아니라 일정한 영역에 관련된 규정을 하나의 집합체에 모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 많고, 그 내용이 法律部와 行政命令部를 나누어 같이 이러한 법전(Code)에 넣는 경향

이 많다.⁸⁾

2. 法典의 立法過程 및 그 構成

본 법전(Code)은 국무총리(Premier Ministre)에 의해 마련된 행정명령(Décret)⁹⁾ 제86-592호로 1986년 3월 18일 제정된 것이다.¹⁰⁾ 본 명령은 내무부 및 지방자치부

8) 약사법전, 예금금고법전 등이 그러하고, 특히 경찰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Code de la route)도 그러하다. 프랑스의 도로교통법은 2000년에 새로운 체계로 완전히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이 法律部와 行政命令部로 나누어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9) Décret은 광의의 행정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에 의해 서명된 일방적 효력을 가지는(행정입법으로 règlement) 또는 개별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집행적 결정 즉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효력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 1958년 헌법은 일반적인 행정입법권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고 있다(제21조). 다만 헌법상 국가원수의 권한에 유보되고 있는 데크레 및 각료회의에서 심의결정된 데크레에는 국가원수가 서명을 한다. 이에 다시 집행명령(règlement d'application)과 독립명령(règlement autonome)이 있다. 전자는 법률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입법으로, 이 행정입법은 법률에 가하여 제정되고, 법률에 위반할 수 없다. 후자는 법률에 유보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또한 배타적으로 제정된 행정입법이다. 따라서 이 행정입법은 헌법 및 법의 일반원칙의 하위에 직접 위치하여 법률에는 종속하지 아니한다. 1958년 헌법은 법률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에 의해 그때까지 경찰 및 공역무의 조직에 한정하고 있던 독립적행정입법의 영역을 아주 확대하였다. 아레떼(Arrêté)는 1명 또는 수인의 장관(長官令, 장관공동령), 또는 다른 행정청(道知事令, 市面長令 등)이 발하는 일반적 또는 개별적인 효력범위를 가지는 집행적 결정으로 부령, 도지사령의 행정규칙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법규 또는 행정명령(règlement)에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에 해당하는 데크레(décret)와 각부장관 및 도지사가 제정하는 아레떼(arrêté)로 구별된다. 데크레는 대통령과 총리, 아레떼는 장관 및 도지사라고 한 행위자에 착안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고, 부령은 기관에 착안하여 붙인 이름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그 성질이 유사하고, 부령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둘째 데크레와 아레떼는 반드시 법규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처분도 포함되고, 행위주체가 대국민과의 관계에서 행정행위-행정입법을 포함-을 하는 경우의 일체의 것을 지칭한다. 이외에 행정법규 및 행정명령으로는 준칙(directive)이 법규의 성질을 가지며 행위자의 재량기준을 보이고, 시민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법적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회람(circulaire, 통첩) 및 훈령(instruction)은 단순한 행정내부적효과를 가질 뿐이고, 법규로서의 성질은 가지지 아니한다. 실제로 경찰에 관련된 법령은 주로 법률(loi)과 행정명령으로서의 데크레와 아레떼로 이루어진다.

10) 정식명칭은 Décret n° 86-592 du 18 mars 1986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 la police nationale 이다.

장관의 보고¹¹⁾에 기초하여 國務委員會 (Conseil d'Etat¹²⁾의 內務擔當部¹³⁾를 통과한 것으로 ①국립경찰의 조직에 관한 1966년 7월 9일 제66-492호 법률,¹⁴⁾ ②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제83-634호 법률,¹⁵⁾ ③국립경찰 현

대회에 관한 1985년 8월 7일 제85-835호 법률¹⁶⁾의 3개의 법률을 그 근거법으로 하고 있다.¹⁷⁾

본 법전은 序編 및 3編의 총2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구성은 다음표와 같다.

편 이 름 (翻 譯)	편 이 름 (原 語)	조 문 수
序 編	Titre Preliminaire	1-6 (6)
제1편 국립경찰의 일반적 의무	TITRE Ier : DEVOIRS GENERAUX DES FONCTIONNAIRES DE LA POLICE NATIONALE	7-12(6)
제2편 경찰의 직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명령권	TITRE II : DROITS ET DEVOIRS RESPECTIFS DES FONCTIONNAIRES DE POLICE ET DES AUTORITES DE COMMANDEMENT.	13-18(6)
제3편 경찰의 통제	TITRE III : DU CONTROLE DE LA POLICE Article	19-20(2)

11) le rapport du ministre de l'intérieur et de la decentralisation.

12) 國事參院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日本의 職制에 따른 번역이고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아니다. 최근 사전에는 國務會議(가령 프라임 불한사전, 두산동아, 1998, 1999, 2쇄, 629쪽)라고 옮기는데, 내각회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또한 타당하지 아니다. 정확하게 이 조직은 행정소송의 측면에서는 行政大法院을 담당하고, 국가의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특히 行政命令이 法律이나 法典과 관련될 때 그 심사를 담당하는 國務機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國務審議委員會라고 옮겨본다. 冢세이유 데따라고 音譯할 수도 있을 것이다.

13) section de l'intérieur.

14) loi n° 66-492 du 9 juillet 1966 portant organisation de la police nationale.

15) Loi n°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에는 警察公務員法이라는 法律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법이 그러한 작용을 한다. 기타의 경찰의 특수한 직무에 따른 규정은 별도의 법령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본법이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 Loi n°85-835 du 7 août 1985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 la police nationale.

17) 본 법전은 1986년 3월 18일에 파리에서 공포되었고, 당시 수상(Premier ministre)은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OUS)이었고, 내무부 겸 지방자치부장관(Ministre de l'Intérieur et de la Decentralisation)은 뻬에르 쥬쎈(Pierre JOXE)이었다.

3. 法典의 譯文¹⁸⁾

가. 序 編

서편에서는 국립경찰의 목적(제1조) 및 국립경찰의 직무에 근거가 되는 법령(제2조)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 근거에서 유럽연합에서 특히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중요 시되는 人權宣言 및 국제협약과 국내의 법률을 동일한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조 국립경찰은 국토 전역에서 자유의 보장, 국가조직의 보호, 공공질서의 유지 및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⁹⁾

제2조 국립경찰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헌법·국제협약 및 법률을 준수하면서, 자기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²⁰⁾

또한 국립경찰의 주된 봉사의 대상이 국

민임을 명시하고 있고(제3조), 그 구조상 계급질서로 구성되고, 그 업무에서 사법경찰로서의 형사업무는 형사소송법의 지배를 받고, 기타의 경찰의 일반적인 업무는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점을 분명히 한다(제4조).

또한 본 법전의 受範者는 경찰공무원 및 그러한 직무를 행하는 자이며(제5조), 본 법전의 의무 또는 責務의 위반은 형법의 처벌과 징계책임이 동시에 병존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제6조).

제3조 국립경찰은 법률과 행정명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프랑스 국민에게 열려있다.²¹⁾

제4조 국립경찰은 계급구조로 조직된다. 사법경찰의 업무에 관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원칙을 제외하고는, 국립경찰은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²²⁾

제5조 본 법전은 국립경찰관 및 그러한

18) 조문은 원칙으로 직역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역한 곳도 있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하여 原文과 譯文을 같이 제시한다. 원문은 <http://www.interieur.gouv.fr/police/deontologie/code.htm> (2001년 10월 현재)에 실려있다.

19) Art. 1er. - La police nationale concourt, sur l'ensemble du territoire, a la garantie des libertés et à la défense des institutions de la République, au maintien de la paix et de l'ordre public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et des biens.

20) Art. 2. - La police nationale s'acquitte de ses missions dans le respect d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la Constitution, d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et des lois.

21) Art. 3.- La police nationale est ouverte à tout citoyen français satisfaisant aux conditions fixées par les lois et règlements.

22) Art. 4. - La police nationale est organisée hiérarchiquement. Sous réserve des règles posées par

업무를 행하도록 법이 정하는 자들에게 적용된다.²³⁾

제6조 본 법전이 정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은 어떤 것이든 그 위반행위자에게 징계 책임이 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인정되는 형사법의 형벌과는 별개의 것이다.²⁴⁾

나. 警察官의 義務에 관한 編(제1편)

제1편은 국립경찰의 경찰관²⁵⁾의 일반적 의무²⁶⁾에 대한 것으로 대민관계에서의 기본 의무 및 업무수행상의 장비 특히 무기의 사용 등의 한계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 ①²⁷⁾ 국립경찰관은 프랑스의 국가

조직에 충성하여야 한다. 그는 완전하고, 편파가 없도록 해야 한다. 즉 어떠한 사정에서도 자기의 품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② 대민업무에서 경찰관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사람들의 국적이나 민족, 사회적 조건이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존경을 보여주어야 한다.²⁸⁾

제8조 경찰관은 그들이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신이 주도하여 위협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한 도움을 제공해 주고,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모든 행위를 예방하여 제거하고, 인신 및 재산의 침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en ce qui concerne les missions de police judiciaire, elle est placée sous l'autorité du ministre de l'intérieur.

23) Art. 5. - Le présent code de déontologie s'applique aux fonctionnaires de la police nationale et aux personnes légalement appelées à participer à ses missions.

24) Art. 6. - Tout manquement aux devoirs définis par le présent code expose son auteur à une sanction disciplinaire, sans préjudice, le cas échéant, des peines prévues par la loi pénale.

25) 본 법전에서 警察 및 警察官을 가르키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것이 쓰이고 있다. personnel de la police nationale 국립경찰의 직원 ; fonctionnaire de police nationale 경찰공무원 즉 경찰관 ; subordonne 직원 ; AUTORITES DE COMMANDEMENT 명령조직, 경찰조직, 경찰관청.

26) TITRE 1er. DEVOIRS GENERAUX DES FONCTIONNAIRES DE LA POLICE NATIONALE.

27) 프랑스의 법령에서 條文의 표시는 제1항·제2항 등의 구별(즉 ①②)가 없고, 조문은 1文, 2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翻譯에서 편의상 ①②③이라는 項의 표시를 하였다.

28) Art. 7. - Le fonctionnaire de la police nationale est loyal envers les institutions républicaines. Il est intègre et impartial : il ne se départit de sa dignité en aucune circonstance.

Placé au service du public, le fonctionnaire de police se comporte envers celui-ci d'une manière exemplaire.

Il a le respect absolu des personnes, quelles que soient leur nationalité ou leur origine, leur condition sociale ou leurs convictions politiques, religieuses ou philosophiques.

해에 대한 개인 및 공동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²⁹⁾

제9조 법률이 유효력을 행사하고, 특히 그의 무기를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경우에, 경찰관은 엄격하게 필요하고 침해하려는 목적에 비례하여서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³⁰⁾

제10조 ① 모든 피의자³¹⁾는 경찰의 책임과 보호 하에 있다. 그는 경찰관이나 제3자의 편에서 어떠한 폭력도 어떠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분을 당해서는 안된다. ② 본 조에 의해 금지된 행위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경찰관이,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거나 소관

관청에 그것을 보고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부담한다.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어느 자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의료진을 요청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³²⁾

제11조 경찰관은 그들이 부담하는 신중의무 및 재량과 업무상 비밀에 관한 원칙에서 유래하는 제한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³³⁾

제12조 내무부장관은 경찰관을 위협·폭행·폭력행위³⁴⁾·상해·명예훼손 또는 그들

29) Art. 8. - Le fonctionnaire de la police nationale est tenu, même lorsqu'il n'est pas en service, d'intervenir de sa propre initiative pour porter assistance à toute personne en danger, pour prévenir ou réprimer tout acte de nature à troubler l'ordre public et protéger l'individu et la collectivité contre les atteintes aux personnes et aux biens.

30) Art. 9. - Lorsqu'il est autorisé par la loi à utiliser la force et, en particulier, à se servir de ses armes, le fonctionnaire de police ne peut en faire qu'un usage strictement nécessaire et proportionné au but à atteindre.

31) 原文의 의미는 “체포된 자 모두”라는 것이다.

32) Art. 10. - Toute personne appréhendée est placée sous la responsabilité et la protection de la police ; elle ne doit subir, de la part des fonctionnaires de police ou de tiers, aucune violence ni aucun traitement inhumain ou dégradant.

Le fonctionnaire de police qui serait témoin d'agissements prohibés par le présent article engage sa responsabilité disciplinaire s'il n'entreprend rien pour les faire cesser ou néglige de les porter à la connaissance de l'autorité compétente.

Le fonctionnaire de police ayant la garde d'une personne dont l'état nécessite des soins spéciaux doit faire appel au personnel médical et, le cas échéant, prendre des mesures pour protéger la vie et la santé de cette personne.

33) Art. 11. - Les fonctionnaires de police peuvent s'exprimer librement dans les limites résultant de l'obligation de réserve à laquelle ils sont tenus et des règles relatives à la discrétion et au secret professionnels.

이 직무수행 중에 피해자가 되게 하는 모욕 행위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³⁵⁾

다. 警察 및 警察官廳의 개별적 權利와 義務(제2편)

제2편은 경찰공무원 개개의 권리와 의무 및 이러한 경찰관의 명령의 권한을 가진 경찰관청으로서의 개별적 권리와 의무³⁶⁾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경찰관의 의무에 대한 행동지침과 그 처리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특히 제17조 참조).

제13조 조직상의 授權官廳은 지시로 업무를 행한다. 이러한 지위에서 관청은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적용하게 한다. 관청은 그

最良의 집행에 필요한 설명을 분명하고, 잘 분류된 명령으로 그 결정을 해석할 수 있다.³⁷⁾

제14조 ① 명령을 내리는 조직은 그가 내린 명령에 대하여 그 집행과 그 결과에 책임을 부담한다. 그 조직이 그의 관할소재지 및 지점에서 행동하도록 어느 직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면, 그는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그 직원이 그의 업무와 그가 받은 명령의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한 행위들에도 책임이 미친다. ② 경찰관은 관청이 자기에게 내린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그는 그의 이행이나 불이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³⁸⁾

제15조 명령을 내린 관청은 자기 명령을

34) 暴行은 프랑스어 비올랑스(violence)를 옮긴 것으로 민법에서는 強迫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新刑法에서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는 하는 범죄를 총칭하고 있다. 暴力行爲는 브와 드 페(voie de fait)를 옮긴 것이다. 이는 판례가 도출한 이론으로,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특히 명백한 위법성을 그 전통적 특권의 대부분을 상실한 것으로 제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실작용이 어떠한 행정권한의 행사에 명백하게 관계되지 아니하고, 공공의 자유 또는 동산이나 부동산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법원은 손해배상소송을 심리하는 배타적으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것에 행정법원과 경합하여 행정의 위법성을 심리할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35) Art. 12. - Le ministre de l'intérieur défend les fonctionnaires de la police nationale contre les menaces, les violences, les voies de fait, les injures, diffamations ou outrages dont ils sont victimes dans l'exercice ou a l'occasion de leurs fonctions.

36) TITRE II DROITS ET DEVOIRS RESPECTIFS DES FONCTIONNAIRES DE POLICE ET DES AUTORITES DE COMMANDEMENT.

37) Art. 13. - L'autorité investie du pouvoir hiérarchique exerce les fonctions de commandement. A ce titre, elle prend les décisions et les fait appliquer ; elle les traduit par des ordres qui doivent être précis et assortis des explications nécessaires à leur bonne exécution.

38) Art. 14. - L'autorité de commandement est responsable des ordres qu'elle donne, de leur exécution et de leurs conséquences. Lorsqu'elle charge un de ses subordonnés d'agir en ses lieu et

위계질서를 통하여 전달한다. 긴급하게 이러한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경우라면 중간단계에는 지체없이 그것을 고지하여야 한다.³⁹⁾

제16조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징계의 일반원칙을 적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자의 직무상 관청이 드러나지 아니한 경찰관에게 어떠한 명령도 내려질 수 없다.⁴⁰⁾

제17조 ① 직원은 관청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다만] 명령이 명백하게 불법하고, 공공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내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원이 그러한 명령이 존재한다고 믿

는 경우에, 그는 그가 문제의 명령에 부여한 불법의 의미를 명백하게 적시하면서 그것을 내린 관청에 그의 이의제기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명령이 유지되고, 그에게 주어진 설명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그 주장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그가 병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차상급관청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것은 반대편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명령의 이행의 거부는 해당자의 책임이 된다.⁴¹⁾

제18조 경찰공무원은 명령을 내린 관청에게 그가 받은 임무 및 경우에 따라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유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⁴²⁾

place, sa responsabilité demeure entière et s'étend aux actes que le subordonné accomplit régulièrement dans le cadre de ses fonctions et des ordres reçus.

Le fonctionnaire de police doit exécuter loyalement les ordres qui lui sont donnés par l'autorité de commandement. Il est responsable de leur exécution ou des conséquences de leur inexécution.

39) Art. 15. - L'autorité de commandement transmet ses ordres par la voie hiérarchique. Si l'urgence ne permet pas de suivre cette voie, les échelons intermédiaires en sont informés sans délai.

40) Art. 16. - Hors le cas de réquisition, aucun ordre ne peut être donné à un fonctionnaire de police qui ne relève pas de l'autorité fonctionnelle de son auteur, si ce n'est pour faire appliquer les règles générales de la discipline.

41) Art. 17. - Le subordonné est tenu de se conformer aux instructions de l'autorité, sauf dans le cas où l'ordre donné est manifestement illégal et de nature à compromettre gravement un intérêt public. Si le subordonné croit se trouver en présence d'un tel ordre, il a le devoir de faire part de ses objections à l'autorité qui l'a donné, en indiquant expressément la signification illégale qu'il attache à l'ordre litigieux.

Si l'ordre est maintenu et si, malgré les explications ou l'interprétation qui lui en ont été données, le subordonné persiste dans sa contestation, il en réfère à la première autorité supérieure qu'il a la possibilité de joindre. Il doit être pris acte de son opposition.

Tout refus d'exécuter un ordre qui ne répondrait pas aux conditions ci-dessus engage la responsabilité de l'intéressé.

라. 警察에 대한 統制⁴³⁾(제3편)

제3편에서는 경찰관의 행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일반적 통제로서 監察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사법경찰의 행위를 행할 때 그들에게 부과되는 중죄기소부⁴⁴⁾의 통제 외에 국립경찰의 직원 및 그들을 지시하는 행정관청은 계급상의 통제 및 행정일반의 감찰상의 통제를 받고, 국립경찰 개인에 관해서는 국립경찰의 일반적 감찰의 통제도 받는다.⁴⁵⁾

제20조 내무 겸 지방자치부 장관은 프랑스의 관보에 게재된 본 행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⁴⁶⁾

4. 本法의 適用範圍

본 법전이 공포된 후에 국립경찰의 업무에 여러 가지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나 지침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선 『국립경찰의 내부명령』(Règlements intérieurs de la police nationale)과 『국립경찰의 책무에 관한 실무지침』(Guide pratique de la déontologie dans la police nationale)을 들 수 있다.

각자의 내용을 편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본 법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⁴⁷⁾

42) Art. 18. - Tout fonctionnaire de police a le devoir de rendre compte à l'autorité de commandement de l'exécution des missions qu'il en a reçues, ou, le cas échéant, des raisons qui ont rendu leur exécution impossible.

43) TITRE III DU CONTROLE DE LA POLICE.

44) Chambre d'accusation에 해당하는 단어로 豫審公訴部 또는 重罪起訴部라고 번역된다. 프랑스의 형사절차에서 제2심의 豫審法官을 말한다. 프랑스의 예심법원은 제1심의 예심판사(juge d'instruction) 및 제2심의 예심공소부(chambre d'accusation)가 있고, 본조는 후자를 말한다. 이들은 특히 형사소송법 제79조 내지 제190조와 제191조 내지 제230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45) Art. 19. - Outre le contrôle de la chambre d'accusation, qui s'impose à eux lorsqu'ils accomplissent des actes de police judiciaire, les personnels de la police nationale et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qui les commandent sont soumis au contrôle hiérarchique et au contrôle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dministration et, s'agissant des seuls personnels de la police nationale, également à celui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police nationale.

46) Art. 20. - Le ministre de l'intérieur et de la décentralisation est chargé de l'exécution du présent décret, qui sera publié au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47)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가. 國立警察內部命令

이 경찰의 내부행정명령(Règlements intérieurs de la police nationale)은 경찰내부의 업무에 관한 일반명령(règlement général d'emploi)으로서 원래 관보(Journal Officiel)에서는 部令(arrêté)의 형태로 공포되었다.

이 행정명령은 다시 (1) 공통규정,⁴⁸⁾ (2)

제1부 제1편 공무원 및 국립경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 (3) 제2편 국립경찰의 감찰의 업무에 관한 특별명령,⁴⁹⁾ (4) 제3편 국립경찰의 사법경찰의 중앙조직의 업무에 관한 특별명령,⁵⁰⁾ (5) 제4편 보안국의 업무에 관한 특별명령,⁵¹⁾ (6) 제5편 경비국의 중앙조직의 특별명령,⁵²⁾ (7) 제6편 이민에 관한 중앙국 및 부정취업금지국의 업무에 관한 특별국,⁵³⁾ (8) 제7편 정보국의 중앙

48) DISPOSITIONS COMMUNES은 제1조 내지 제3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본 국립경찰의 행정명령의 조항은 국립경찰의 실무 또는 행정(지원) 부서에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그들의 법률적 지위나 규정상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무관하며, 국립경찰에 보조경찰로서 배치된 국방의무를 행하는 자도 포함한다.

이러한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규정이 본 명령의 제1편의 목적이 된다.

각 국 및 실무부서 및 파리지방청에 특별한 임용규정은 제2편의 목적이 되며, 전술한 공통규정과 일치되어 인정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국 및 실무부서 및 파리지방청의 일반적 내부규정 및 특별한 내부규정도 이와 동일하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49) TITRE II : REGLEMENT D'EMPLOI PARTICULIER DE L'INSPECTION GENERALE DE LA POLICE NATIONALE (I.G.P.N.)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임무(제221-1조 내지 제221-4조), 제2장 조직((제222-1조 내지 제222-2조) 및 제3장 인원(제223-1조 내지 제223-8조).

50) TITRE III : REGLEMENT D'EMPLOI PARTICULIER DE LA DIRECTION CENTRALE DE LA POLICE JUDICIAIRE (D.C.P.J.)은 제230-1조 및 4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임무·조직(제231-1조 내지 제231-2조)

제2장 계급상의 권한의 행사(제232-1조 내지 제232-3조)

제3장 사법경찰의 중앙조직의 역할과 임무(제233-1조 내지 제233-5조)

제4장 권리와 의무(제234-1조 내지 제234-4조)

51) TITRE IV : REGLEMENT D'EMPLOI PARTICULIER DE LA DIRECTION DE LA SURVEILLANCE DU TERRITOIRE (D.S.T.)((제240-1조 내지 제240-12조).

52) TITRE V : REGLEMENT PARTICULIER DE LA DIRECTION CENTRALE DE LA SECURITE PUBLIQUE (D.C.S.P.)은 제250-1조 및 4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임무(제251-1조)

제2장 조직(제252-1조 내지 제252-8조)

제3장 인원(제253-1조 내지 제253-7조)

제4장 근로조건 및 내부근무조건(제254-1조 내지 제254-4조)

조직의 업무에 관한 특별명령,⁵⁴⁾ (9) 제8편 경찰기동대의 중앙조직의 업무에 관한 특별명령,⁵⁵⁾ (10) 제9편 국제협력국의 업무에 관한 특별명령,⁵⁶⁾ (11) 제10편 경호국의 업무에 관한 특별명령,⁵⁷⁾ (12) 제11편 파리(수도)지방경찰청의 업무에 관한 특

- 53) TITRE VI : REGLEMENT D'EMPLOI PARTICULIER DE LA DIRECTION CENTRALE DU CONTROLE DE L'IMMIGRATION ET DE LA LUTTE CONTRE L'EMPLOI DES CLANDESTINS (D.I.C.C.I.L.E.C.)은 제260-1조 및 4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임무(제261-1조)
제2장 조직 및 계급의 권한행사
제1절 중앙국의 조직[제262-1조]
제2절 지방국의 조직[제262-2조 내지 제262-3조]
제3장 인원(제263-1조 내지 제263-7조)
제4장 직원의 권리와 의무
제1절 배속 및 배속의 변경[제264-1조]
제2절 제복의 착용 및 직원의 복장[제264-2조]
제3절 근로조건 및 근로시간[제264-3조]
- 54) TITRE VII : REGLEMENT D'EMPLOI PARTICULIER DE LA DIRECTION CENTRALE DES RENSEIGNEMENTS GENERAUX (D.C.R.G.)는 제270-1조 및 2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임무, 조직(제271-1조 내지 제271-3조)
제2장 인원(제272-1조 내지 제272-6조)
- 55) TITRE VIII : REGLEMENT D'EMPLOI PARTICULIER DU SERVICE CENTRAL DES COMPAGNIES REPUBLICAINES DE SECURITE (S.C.C.R.S.)는 제280-1조 및 3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임무 및 조직
제1절 임무[제281-1조]
제2절 권한 및 위계조직[제281-2조 내지 제281-4조]
제3절 재량 및 의무[제281-5조 내지 제281-8조]
제2장 업무의 수행
제1절 본부의 업무[제281-1조 내지 제282-2조]
제2절 전보업무[제282-3조 내지 제282-6조]
제3절 보충제도[제282-7조 내지 제282-8조]
제4절 도로순찰대원 및 기동타격대원에 적용되는 업무[제282-9조 내지 제282-10조]
제5절 산악구조대원에게 적용되는 업무[제282-11조]
제3장 장비 및 무기(제283-1조)
- 56) TITRE IX : REGLEMENT D'EMPLOI PARTICULIER DU SERVICE DE COOPERATION TECHNIQUE INTERNATIONALE DE POLICE (S.C.T.I.P.)는 제290-1조 및 4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임무(제291-1조)
제2장 조직(제292-1조 내지 제292-6조)
제3장 인원(제293-1조 내지 제293-4조)
제4장 임용조건(제294-1조 내지 제294-3조)

별명령⁵⁸⁾이라는 다수의 특별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경찰의 책무에 관한 법전의 실행을 위한 규정은 「공무원 및 국립경찰관의

57) TITRE X : REGLEMENT D'EMPLOI PARTICULIER DU SERVICE DE PROTECTION DES HAUTES PERSONNALITES (S.P.H.P.)는 제2100-1조 및 5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임무(제2101-1조)

제2장 조직(제2102-1조)

제3장 인원(제2103-1조 내지 제2103-4조)

제4장 임용조건(제2104-1조 내지 제2104-4조)

제5장 책무(제2105-1조)

58) TITRE XI : REGLEMENT D'EMPLOI PARTICULIER DE LA PREFECTURE DE POLICE는 제2110-1조 내지 제2110-2조 및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수도지방경찰관에 속하는 경찰업무 전체의 공통규정

제1절 임무·조직(제2111-1조 내지 제2111-11조)

제2절 임무의 행사방법(제2111-12조 내지 제2111-13조)

제3절 인원의 대우에 관한 특별한 종류(제2111-14조 내지 제2111-15조),

제2장 수도경찰청의 경비국의 특별규정

제1절 局 및 청의 조직(제2112-1조 내지 제2112-2조)

제2절 실무직원의 역할과 임무(제2112-3조 내지 제2113-5조)

제3절 근무시간의 편성(제2112-6조)

제4절 제복의 착용(제2112-7조-제2112-8조)

제3장 수도경찰청의 사법경찰국에 대한 특별규정

제1절 局과 室의 조직(제2113-1조 내지)

제2절 각각의 부서직원의 역할과 임무(제2113-4조 내지)

제3절 근무시간의 편성(제2113-7조 내지 제2113-8조)

제4절 제복의 착용(제2113-9조)

제4장 수도경찰청의 정보국의 특별규정

제1절 국과 실의 조직(제2114-1조 내지 -제2114-5조)

제2절 근무시간의 편성(제2114-6조 내지 제2114-8조)

제3절 제복의 착용(제2114-9조)

제4절 특칙(제2114-10조)

제5장 수도경찰청의 장비(기술)국의 특별규정

제1절 국과 실의 조직(제2115-1조)

제2절 각각의 조직원의 역할과 임무(제2115-2조 내지 제2115-6조)

제3절 근무시간의 편성(제2114-7조)

제4절 제복의 착용(제2115-8조)

제5절 특칙(제2115-9조)

제6장 감찰국의 특별규정

제1절 감찰조직(제2116-1조)

업무에 관한 규정』⁵⁹⁾ (제1부 제1편) 중에서 제6절⁶⁰⁾이다. 따라서 우리가 본 법전의 실제적 활용을 알려면 본 절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제113-38조 ① 국립경찰 중 실무담당경찰관은 다음 법령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면서, 그들에게 부과된 임무와 그들이 받은 명령을 행한다.

-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제83-634호 법률, 특히 제

25조, 제1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

- 국가공무에 관한 지위에 관한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률, 특히 제66조 및 제67조.
- 치안에 관한 지침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 국립경찰의 책무에 관한 법전을 내용으로 하는 1986년 3월 18일 제86-592호 명령
- 국립경찰의 실무담당직원과 局에 적용

제2절 각 부서원의 역할과 임무(제2116-2조 내지 제2116-6조)

제3절 근로시간의 편성(2116-7조 내지 제2116-8조)

제4절 제복의 착용(제2116-9조)

59) 제1부 : 제1편 공무원 및 국립경찰관의 임용에 관한 규정

(1ere partie : LIVRE I "REGLEMENT D'EMPLOI DES FONCTIONNAIRES ET DES AGENTS DE LA POLICE NATIONALE)

제1편 국립경찰의 실무자에게 적용할 공통규정(제110-1조 내지 제110-2조)

(TITRE I : DISPOSITIONS COMMUNES APPLICABLES AUX PERSONNELS ACTIFS DE LA POLICE NATIONALE)

제1장 직위상 권한

제1절 국립경찰의 계급구조(제111-1조)

제2절 직위상 권한행사(제111-2조 내지 제111-8조)

제2장 국립경찰조직의 역할과 임무(제112-1조 내지 제112-2조)

제3장 권리와 의무(제113-1조 내지 제113-46조)

제1절 제복의 착용(제113-1조 내지 제113-4조)

제2절 배치·재량 및 자원(제113-5조 내지 제113-11조)

제3절 업무조직(제113-12조 내지 제113-26조)

제4절 사회보장관련규정 및 의료관련규정(제113-27조 내지 제113-35조)

제5절 보수교육(제113-35조 내지)

제6절 경찰책무법전의 실행(제113-38조 내지 제113-40조)

제7절 단체협력 조직 및 단체노조권(제113-41조 내지 제113-46조)

제4장 장비 및 무기(제114-1조 내지 제114-6조)

60) Section 6 : Pratique de la deontologie policiere(제113-38조 내지 제113-40조).

될 공통규정을 정하는 1995년 3월 9일 제95

- 654호 명령, 특히 제19조,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 및 그들의 적용을 위한 여러 법문

② 이 조문의 주된 규정은 본 업무에 관한 일반규정의 부록 제1번에 다시 규정된다.⁶¹⁾

제113-39조 ① 경찰관은 현행법의 범위에서 직무상의 비밀 및 수사상 및 소송상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② 그들은 그들에

게 의무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및 모든 사실, 정보 또는 그들이 그들의 직무수행이나 직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알게 된 문서와 관련된 직업상의 재량에 관한 규정의 범위에서만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항상 그들이 직무 수행 중이든 아니든 공중에 대하여 자기에 속하는 조직에 대한 품위저하를 가져올 성질의 행위나 언사를 삼가야 한다. ③ 대중매체와의 업무의 상호교류는 그들의 위계질서상 이러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엄격한 명령의 범위에서만 행해진다.⁶²⁾

61) Art. 113-38 : Les fonctionnaires actifs de la police nationale exécutent les missions qui leur sont assignées et les ordres qu'ils reçoivent dans le respect des droits et des obligations qui sont prévus par :

- la loi n°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et notamment ses articles 25, 26, 27, 28, 29 et 30 ;
- la loi n°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et notamment ses articles 66 et 67 ;
- la loi n°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
- le décret n°86-592 du 18 mars 1986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 la police nationale ;
- le décret n°95-654 du 9 mai 1995 fixant les dispositions communes applicables aux fonctionnaires actifs des services de la police nationale, et notamment ses articles 19, 24, 29 et 30 ; et dans les textes pris pour leur application.

Les dispositions principales de ces textes sont reproduites en annexe I du présent règlement général d'emploi.

62) Art. 113-39 : Les fonctionnaires de la police nationale sont tenus au secret professionnel et au secret de l'enquête et de l'instruction dans le cadre des textes en vigueur.

Ils peuvent s'exprimer librement dans les limites de l'obligation de réserve à laquelle ils sont tenus et des règles relatives à la discrétion professionnelle qui concerne tous les faits, les informations ou les documents dont ils ont une connaissance directe ou indirect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leur profession. Enfin, ils doivent, en tout temps, qu'ils soient ou non en service, s'abstenir en public de tout acte ou propos de nature à porter la déconsidération sur l'institution à laquelle ils appartiennent.

제113-40조 영리목적의 단체의 가입은 경찰서에서 금지된다. 동일하게 이러한 사업은 공공업무 및 이용자의 이익의 엄한 영역에 머물러야 할 것이 요청되는 공무원 측에서, 자유경쟁을 해하는 성질의 것은 권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⁶³⁾

본 절의 규정은 공통규정(제1조 내지 제3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경찰관에게 적용되는 점(제1조 참조)에 비추어 경찰관의 책무에 관한 법전이 실제로 모든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國立警察의 責務에 대한 實務指針

국립경찰의 책무에 관한 실무지침(Guide pratique de la deontologie dans la police nationale)은 경찰관의 책무와 관련하여 국민·피해자·범죄 행위자·증인·강제력의 행사·정보·경찰관 상호간의 관계·그 행정관리 및 근무환경의 측면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설명을 하고 있다.⁶⁴⁾

본 지침의 서문에 따르면 1986년 3월 18일의 데크레로 국립경찰의 책무에 관한 법전이 공포되었다. 20개의 조문으로 그것은 피의자, 민족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타인

La communication des services avec les medias s'effectue dans le cadre strict des instructions qui leur sont donnees par leur hiérarchie à cet effet.

63) Art. 113-40 : Le démarchage de sociétés à but lucratif est interdit au sein des locaux de police ; de même ces entreprises ne doivent en aucun cas faire l'objet de recommandation, de nature à nuire à la libre concurrence, de la part des fonctionnaires sollicités qui doivent rester dans le strict cadre du service public et de l'intérêt des usagers.

64) 이 실무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머리말(Preface)
- 경찰관과 시민(Le fonctionnaire de police et le public)
- 경찰관과 피해자(Le fonctionnaire de police et les victimes)
- 경찰관과 범죄자(Le fonctionnaire de police et les auteurs d'infractions)
- 경찰관과 증인(Le fonctionnaire de police et les témoins)
- 경찰관과 강제력의 행사(Le fonctionnaire de police et l'usage des pouvoirs de contrainte)
- 경찰관과 정보(Le fonctionnaire de police et le renseignement)
- 경찰관 상호간의 관계(Les fonctionnaires de police entre eux)
- 경찰관과 그 업무처리(Le fonctionnaire de police et son administration)
- 경찰관과 업무환경(Le fonctionnaire de police et son environnement professionnel)
- 국립경찰의 책무에 관한 법전(Code de déontologie de la police nationale)
- 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의 존중, 품위, 신중, 사리사욕을 떠남, 공정함 및 기타의 것과 같은 프랑스적인 원칙을 고려하면서 행동원칙의 전체를 요약하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법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게다가 그 원칙이 경찰의 일상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본 법전이 경찰조직에 전면적으로 완성을 위한 것으로, 일부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모든 경찰의 직무상 실무에 미치는 의무로서 정하고 있다.

본 실무지침은 국립경찰윤리에 대한 최고 위원회의 권위 아래 마련된 것으로, 이 점에서 필수적인 도구로서, 법전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어떻게 본 윤리법전이 정한 원칙이 국립경찰의 일상생활의 실제에서 나타나 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법전의 성공은 특히 이 실무지침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5. 앞으로의 研究方向

이상에서는 특히 최근의 경찰관의 책무에 관한 법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프랑스경찰행

정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의 경찰은 경찰법이라는 단일한 법으로 문제를 처리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운용에서 탄력적으로 문제를 처리해나가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전의 내용의 구체적 실현은 실무지침을 통하여 경찰활동이 실제적인 효율성을 가져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업무처리는 프랑스의 경찰활동이 한두개의 법령의 개정이나 조직변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활동의 정착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점도 볼 수 있다.

본 법전과 경찰조직에 관한 다른 법령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도 앞으로 이루어나갈 중요한 작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국립경찰의 기타 관련법령의 번역 및 경찰활동의 실제적인 지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프랑스경찰은 국가경찰이라는 기본체계에서의 경찰의 나아갈 바를 보여주는 것으로 프랑스경찰의 바른 연구는 국가경찰로서의 우리 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⁶⁵⁾

65) 앞으로 프랑스의 경찰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警察法 書を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